

소방청 전문경력관(항공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소방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4월 25일

소방청장

1 임용예정인원 (3개 직위, 총 4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항공(조종)	전문경력관 가군	2명	정년 적용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항공(정비)	전문경력관 나군	1명		
항공(운항관제)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세종)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항공	조종	전문경력관 가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 헬리콥터를 활용한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대형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산불화재 및 특수화재 항공 진압○ 소방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시험비행 및 기술 유지 비행○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정비	전문경력관 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 헬리콥터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 헬리콥터 탑승비행 및 정비○ 소방 헬리콥터 자재 관리 및 정비계획 작성○ 인명구조 작업을 위한 호이스트 작동 및 구조 활동 지원○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운항관제	전문경력관 가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소방헬기 출동상황 조정·관제 ○ 항공통신망 지휘·작전 및 관제 및 소방헬기 네트워크 형성 ○ 항공기 광역출동체계 가동 ○ 항공기 사고 육상 수색구조(RCC) 등
--	------	----------	---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전문경력관 규정, 공무원 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항공안전법」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에 따른 효력 정지 및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6.28.) 기준]

● 조종(전문경력관 가군)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항공 조종	필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 소지 및 2년 이상의 조종경력(해당 자격증 소지하기 전의 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 ② 헬리콥터 조종경력을 총 2,0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500시간 포함) 보유한 사람(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③ 전자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④ 「항공안전법」 제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 자일 경우 「항공안전법시행규칙」 별표4(계기비행 증명)에 따라 최대 20시간의 범위에서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20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실시한 계기비행훈련시간을 포함할 수 있음 ※ 계기비행 시간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⑤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정비(전문경력관 나군)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항공 정비	필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헬리콥터)을 소지한 후 헬리콥터 정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최근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 경험(헬리콥터)이 있는 사람

● 운항관제(전문경력관 가군)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항공 운항관제	필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4등급 이상인 자 ○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4.6.28.)**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함**
-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의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만 인정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함(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①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담당업무 미기재, 채용 분야와 연관성이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담당업무를 기술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② 비정규직의 경우 관련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③ 경력증명서 제출 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기재(각종 증명서류 미제출 시 관련 업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필수 제출)
- ④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예외) **발행분**을 제출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⑤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경력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 또는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근무경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람만 인정

- ①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 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실적, 수입 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②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에서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함

■ 폐업회사의 경우 다음의 경력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원,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 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total.kcomwel.or.kr)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ei.go.kr)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을 받은 한국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 자격증(면허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 취소 또는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함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5.5.) 기준]

- 조종(전문경력관 가군) 및 정비(전문경력관 나군)는 우대요건 없음
- 운항관제(전문경력관 가군) 우대요건은 아래와 같음

우대요건						
자격증 또는 영어성적	○ 운항관리사와 항공교통관제사 2가지 자격증 보유자					
	○ 영어 능통자 [아래의 성적 보유자(기준일로 2년 이내의 성적)]					
	구분	토플		토익	텡스	지텔프
종류	PBT	IBT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Level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증빙자료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운항관리사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과 관련하여 2가지 모두 보유 시에만 우대요건 인정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조종 및 정비는 소극적 서류전형으로 시행
- 운항관제의 경우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응시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소극적 전형)하고, 응시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함
 - ※ 운항관제의 경우 5순위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신체검사

● (검사방법)

- 조종사: 2개 ㄱ① 항공안전법 제40조 “항공신체검사증명”
ㄴ②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정 비, 운항관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조종사·정비·운항관제는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가 아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22p) 제출

● (제출방법 및 기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조종사, 정비, 운항관제) 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제출
-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는(조종사) 원서접수 기간 내 119고시(온라인)에 제출

- 신체검사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시험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함

다. 실기시험

- (시험대상)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기준) 당해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평정표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평정하고 점수 부여

채용분야	실기시험 평정항목
조종사 (모의비행 10개 항목)	① 이륙 상승 및 선회 ② 강하 및 선회 ③ 헬기장 접근 ④ 구조·구급 임무 ⑤ 화재진압 임무 ⑥ 자세회복 ⑦ 계기비행 전환 ⑧ 무선교신절차 ⑨ CRM(승무원 자원관리) ⑩ 비상절차
정비사 (구술 10개 항목)	① 기체계통 ② 엔진 및 동력전달계통 ③ 연료 및 윤활계통 ④ 회전익계통 ⑤ 유압 및 조종계통, ⑥ 전기·전자·통신·계기 ⑦ 항공안전법 및 정비행정 ⑧ 영어능력평가 ⑨ 탑승정비사의 CRM 및 항공안전관리 ⑩ 탑승정비사의 역할
운항관제 (구술 10개 항목)	① 운항계획 ② 항공정보 ③ 입출항 절차 ④ 비행 중 절차 ⑤ 운항관리 ⑥ 항행안전시설 ⑦ 비정상 운항절차 ⑧ 회전익 운항 기술기준 ⑨ 항공영어/항공기사고 수색구조 ⑩ 항공안전관리/항공안전법

- (합격기준) 평정항목별 40퍼센트 이상, 전 평정항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라. 면접시험

- (시험위원) 3명 이상(외부위원 1/2 이상)
 - ※ 면접 중 위원 회피(기피) 시에도 3명 이상 유지가 가능하도록 구성
- (시험방법) 2차 시험(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평정요소	평정 점수			
		10점	8점	6점	4점
1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합격 기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2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불합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2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 인 경우 불합격으로 결정 ② 4개의 평정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점 이하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결정

※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동점자의 합격결정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함(셋째 자리에서 절사)

6 시험 일정

시험단계	시험절차	채용분야	시험공고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	------	------	------	------	--------

시험공고: '24. 4. 25.(목)

원서접수: '24. 5. 1.(수) ~ 5. 5.(일)

1차	서류전형		-	5. 22.(수) 한	5. 23.(목)
2차	실기시험	조종	5. 23.(목)	5. 28.(화) ~ 6. 5.(수) 기간 중 하루	6. 17.(월)
		정비			
		운항관제			
3차	면접시험	조종	6. 17.(월)	6. 26.(수) ~ 6. 28.(금) 기간 중 하루	7. 10.(수)
		정비			
		운항관제			

- 1) 응시번호는 '24. 5. 22.(수) 10:00부터 119고시 마이페이지(원서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
- 2)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 3) 실기·면접시험은 '24년 소방공무원(항공분야) 채용시험(공고 2024-79호)과 병행 시행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기시험·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실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119고시, 소방청 누리집)발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 등은 119고시, 소방청 누리집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24. 5. 1.(수) 10:00 ~ 5. 5.(일) 18:00
 - ※ 2024년 소방공무원(항공분야) 채용시험(공고 2024-79호)과 중복접수 불가함
 - ※ 문의전화: 044-205-7288(채용절차), 044-205-7290(응시자격, 서류안내)
- 접수방법: 119고시(119gosi.kr)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 ※ 119고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불가
 - ※ 응시수수료 반환은 원서접수 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를 완료해야 함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
 -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확인할 것
 - ※ 확인방법: 119고시 → 마이페이지 → 내접수내역
 -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 면접시험 시 신분증, 응시표,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소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면접 시험일에 제출
- 응시수수료: 전문경력관 가군 7천원, 나군 7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증명서류는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함
- 경력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상담(☎ 044-205-7290) 후 모든 서류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분야	제출서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⑦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1부 ⑧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항공분야는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으면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⑨ 자격표(국방부), 군부대 경력증명서 중 임용사항, 근무경력, 징계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1부(항공분야 중 군 경력자에 한함) 	
조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명서 1부 ②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③ 비행경력증명서(각 근무 기관별 최종 비행시간이 명시된 발행본) 1부 ④ 계기비행자격증명서 1부 ⑤ 항공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사본 1부 ⑥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최종시험예정일 기준 12개월 이내 발행) 1부 ⑦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면접시험 시 제출) 	
정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서 1부 ② 헬리콥터 정비 경력증명서(각 근무 기관별 발행본) 1부 ③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면접시험 시 제출) 	
운항 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 1부 ②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4등급 이상 / 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1부 ③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④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면접시험 시 제출) 	
	우대요건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관리사 + 항공교통관제사 ※ 응시자격요건에 사용하지 않은 자격증 제출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서명하여 이메일(dlswol19@korea.kr)로 제출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7. 11. ~ '24. 8. 9.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 7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구분	2024년도 월지급액 참고표 (단위: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경력관 가군	6,363,500 (40호봉)	2,717,000 (1호봉)
전문경력관 나군	4,848,600 (38호봉)	2,050,600 (1호봉)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The screenshot shows the '민원증명' (Fact Certificate) application page on the Hometax website.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민원증명 이용시간** (Service Hours):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연중무휴 24시간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연중무휴 08:00 ~ 22:00
 - 사실증명발급신청: 연중무휴 09:00 ~ 24:00
- 민원증명 이용절차** (Application Process):
 - 01 홈택스 로그인
 - 02 민원증명 신청인행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and '2.')
 - 공통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증명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 03 나의 민원증명 처리결과
 - 04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
- 민원증명 신청** (Documents to Submit):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납세증명서(국세관납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표준채무제표증명
 - 연급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증명사업장 증명
 - 모형납세자증명
 - 국세납세증명 조회(경부관리기관용)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8)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전문경력관 가군(헬리콥터 조종)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헬리콥터 조종	전문경력관 가군	2명

근무예정부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 헬리콥터를 활용한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 대형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 산불화재 및 특수화재 항공 진압, 시험비행 및 기술 유지 비행 ○ 소방 헬리콥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등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비행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논리적사고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 및 인명구조 관련 기술 ○ 항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소방 헬리콥터의 특수성 및 해외 사례 분석에 필요한 지식 ○ 항공기상 및 항공 교통 관제 지식

※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응시자격요건	필수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 소지 및 2년 이상의 조종경력(해당 자격증 소지하기 전의 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 ② 헬리콥터 조종경력을 총 2,000시간 이상(다발 헬리콥터 조종 500시간 포함) 보유한 사람(모의비행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③ 전자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④ 「항공안전법」 제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을 충족한 자일 경우 「항공안전법시행규칙」 별표4(계기비행증명)에 따라 최대 20시간의 범위에서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20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의 범위에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실시한 계기비행훈련시간을 포함할 수 있음 ※ 계기비행 시간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⑤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우대요건	○ 해당 사항 없음

전문경력관 나군(헬리콥터 정비)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헬리콥터 정비	전문경력관 나군	1명

근무예정부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 헬리콥터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 헬리콥터 탑승비행 및 정비 ○ 소방 헬리콥터 자재 관리 및 정비계획 작성 ○ 인명구조 작업을 위한 호이스트 작동 및 구조 활동 지원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긍정성(긍정적 팔로워십), 문제해결력·관계 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집행관리능력, 계획관리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역량(기체계통, 엔진 및 동력전달계통, 연료 및 윤활계통) ○ 회전익 계통, 유압 및 조정 계통, 전기·전자·통신·계기 ○ 관리역량(항공안전법 및 정비행정, 영어 능력 평가) ○ 임무역량(탑승정비사의 CRM 및 항공안전 지식 정도, 역할 등)
--------------	--

※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응시 자격 요건	필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법」제35조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헬리콥터)을 소지한 후 헬리콥터 정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라 최근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 경험(헬리콥터)이 있는 사람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항 없음

전문경력관 가군(운항관제)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운항관제	전문경력관 가군	1명

근무예정부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세종)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소방헬기 출동상황 조정·관제 ○ 항공통신망 지휘·작전 및 관제 ○ 소방헬기 네트워크 형성 ○ 대규모 재난발생시 광역출동체계 가동 ○ 항공기사고 육상 수색구조(RCC) 업무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논리적사고, 전문성 등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기 출동상황 조정·관제에 관한 지식 ○ 항공통신망 지휘·작전운영에 관한 지식 ○ 소방헬기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지식
--------------	---

※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응시 자 격 요 건	필수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4등급 이상인 자 ○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	-----------------------	--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관리사와 항공교통관제사 2가지 자격증 보유자 ○ 영어 능통자 [아래의 성적 보유자(기준일로 2년 이내의 성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토플</th> <th rowspan="2">토익</th> <th rowspan="2">텡스</th> <th rowspan="2">지텔프</th> <th rowspan="2">플렉스</th> </tr> <tr> <th>PBT</th> <th>IBT</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종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530점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71점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점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40점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Level2의 65점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625점 이상</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24.5.5.) 기준</p>	구분	토플		토익	텡스	지텔프	플렉스	PBT	IBT	종류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Level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구분	토플		토익	텡스					지텔프	플렉스							
	PBT	IBT															
종류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Level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조종사			
<input type="checkbox"/> 정비사			
<input type="checkbox"/> 운항관제			

구분	연번	제출목록	제출 여부	
			제출	미제출
공통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2	자기소개서		
	3	직무수행계획서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5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소득금액증명원		
	8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9	자격표(국방부), 군부대 경력증명서 중 임용사항, 근무경력, 징계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군 경력자에 한함) 1부		
조종사	1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명서		
	2	경력(재직)증명서		
	3	비행경력증명서(각 근무 기관별 최종 비행시간이 명시된 발행본)		
	4	계기비행자격증명서		
	5	항공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증명서		
	6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최종시험예정일 기준 12월 이내 발행)		
	7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정비사	1	정비사 자격증명서		
	2	헬리콥터 정비 경력증명서(각 근무 기관별 발행본)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운항관제	1	운항관리사 자격증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 우대요건 충족자는 위의 자격 모두 제출		
	2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4등급 이상)		
	3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4	(우대요건) 영어검정시험 성적증명서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2024. . .

성명: (서명)

소방청장 귀하

직무수행 계획서

응 시 번 호		성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요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 색은 검정- 줄 간격 160%로 작성할 것- 보고서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시험공고에 명시된 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작성 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2024. . .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근무경력 사실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이 사실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 경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 . . ~ . . . (년 월)

입증인(1)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

입증인(2)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 -

붙임: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1부

소방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⑧ 주민등록번호	
⑦ 재 사용				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우: ()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 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 격	합격 사유	
합격 여부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	----------

210mm×297mm[백상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결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부처	소방청
생년월일	. . .	응시직급	조종 전문경력관 0군

본인은 소방청에서 시행하는 전문경력관(항공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소방청이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채용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를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합격증명서 발급 신청서

시 험 명	2024년 전문경력관(항공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지역		응시번호	
분야(계급)		성별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 -	이메일주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의거 위와 같이 합격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119**